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584
----------	------

제출일자 : 2024. 11. 1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 및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및 업무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기타

(1) 입법예고(2024. 8. 19. ~ 9. 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영위자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용자에 협조,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년 군수가 수립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세금 체납 중소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
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중소기업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가 대출 실행 기간 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 중소기업 영위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로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차보전금 지원의 중지 및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을 받았을 경우
3.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영위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등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는 그 중소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를 군수와 해당 대출 금융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① 제5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

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우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가. 사업대상 : 달성군 관내 중소기업
- 나. 사업규모 : 18억 원
- 다. 사업기간 : 1년

2.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중 일정 범위에서 달성군이 1년간 이자 지원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자 추천액 : 경영안정자금 600억
- 이차보전을 : 제4조에 따라 매년 이차보전을 결정 및 공고

나. 추계 결과

- 이차보전을 최대 3% 설정 시 사업비 추계

(단위 : 백만 원)

연 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소요액	1,800	1,800	1,800	1,800	1,800

- 다. 재원조달방안 : 달성군 자체사업비 조달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경제환경국 경제산업과 원스톱기업팀장 이미경
(053-668-2651)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비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